

컴플라이언스 규정

제정 2021. 12. 17.

개정 2024. 7. 23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본 컴플라이언스 규정(이하 “본 규정”)은 회사의 투자사업부문 임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절차 및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회사가 운용 또는 자문하는 벤처투자조합, 사모집합투자기구, 해외소재 펀드 등 투자기구(이하 “펀드”라 총칭)에 출자약정 또는 출자한 투자자(이하 “투자자”) 보호와 회사의 경영 건전성 제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범위)

본 규정은 회사 및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임직원에게 적용한다.

제 2 장 일반원칙

제 3 조 (투자자 이익 우선 원칙)

- ① 펀드 및 투자자의 이익은 회사와 회사의 주주 및 임직원의 이익에 우선하여야 한다.
- ② 모든 투자자의 이익은 동등하게 다루어져야 하고, 회사는 펀드의 결성·운영 및 청산시에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 투자자를 우대하거나 차별 취급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③ 회사의 이익은 임직원의 이익에 우선하여야 한다.

제 4 조 (선관주의의무)

회사 및 임직원은 펀드 및 투자자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본 규정이 정하는 절차와 내용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 5 조 (이해상충의 파악·평가 및 관리 등)

- ① 임직원은 회사와 투자자 간, 회사 또는 펀드와 임직원 간, 특정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 간, 펀드와 타펀드 간 등 이해상충의 관계에 있거나 이해상충이 우려되는 경우, 준법감시인과 사전에 협의하여 투자자 보호 등에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② 임직원은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검토한 결과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미리 회사를 통해 해당 투자자에게 알려야 하며, 그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낮추어 투자자의 이익이 침해받지 아니하도록 조치를 취한 후 투자, 회수 및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거래를 하여야 한다.
- ③ 회사는 실제 발생한 이해상충 문제 또는 향후의 이해상충 가능성을 상세히 점검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공개 가능한 경우 그 점검 결과를 공개한다.

제 3 장 이해상충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체제

제 6 조 (내부통제조직)

- ① 회사의 이사회는 회사 내 이해상충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고, 효율적인 이해상충방지체제를 구축 및 운영하도록 한다.
- ② 회사의 대표이사는 내부통제체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최고책임자로서 필요한 제반사항을 지원한다.
- ③ 회사는 1인 이상의 준법감시인을 두도록 하며, 준법감시인은 본 규정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본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고 감독하며,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미비사항에 대한 개선, 시정요구 등 내부통제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한다. 단, 준법감시인은 투자업무를 제외한 회사의 다른 업무를 겸임할 수 있다.

제 7 조 (관계법령 및 규정 준수)

- ① 임직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령 및 본 규정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② 임직원은 제1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 및 본 규정의 준수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전에 준법감시인의 자문을 받는 등으로 관계 법령 및 본 규정의 준수를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 ③ 임직원은 회사에서 정하는 비밀유지 및 관계법령과 회사 규정 준수 등을 내용으로 하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임직원은 동료 임직원의 관계법령 또는 회사 규정 위반행위에 관여하거나 조력하여서는 아니되며, 위반행위를 발견한 때에는 회사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⑤ 국외에서 근무하는 임직원은 주재국의 법규를 준수해야 하고, 국가 및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⑥ 회사는 임직원이 이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인사규정 등에 따라 징계하거나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여야 한다.

제 8 조 (불공정 거래행위 등의 금지)

- ① 임직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당한 거래거절, 경쟁사업자 배제, 부당한 고객유인, 거래상 지위 남용, 거래상대방의 사업활동 방해 행위, 특수관계인(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정한 특수관계인, 이하 같음)에 대한 부당거래 및 지원행위, 회사 또는 펀드와의 이해상충 관계에서 본인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행위 등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 거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② 임직원은 다른 회사 또는 금융기관과 펀드의 결성, 운영, 청산등과 관련하여 거래조건 등을 담합하는 등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 ③ 임직원은 자기계산에 의한 투자 및 회수 등 거래와 관련하여 불공정 거래행위의 방지 및 회사 또는 펀드와의 이해상충 방지를 위하여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임직원의 거래 기준 및 절차」(붙임 1)를 준수하여야 한다.
- ④ 임직원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관련 법규, 약관(정관) 및 회사가 정하는 투자기준 등을 위반하여 간접투자재산 또는 고유재산을 운용하는 행위

2. 회사의 운용전략, 매매계획 등 운용관련 정보의 외부 유출을 통하여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3. 회사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지 아니한 자로부터의 지시 또는 권유에 의하거나 다른 회사 또는 투자대상회사의 임직원과의 담합 등에 의한 투자행위
4. 특정 투자자 또는 특정 펀드가 자산의 거래 또는 배분 등의 방법을 통하여 우선적으로 수혜를 받거나 손해를 보게 하는 일체의 행위
5. 회사, 계열사 등 제3자의 이익을 투자자의 이익에 우선하는 행위
6. 투자자의 투자유치를 목적으로 일정한 이익을 보장하거나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
7. 회사의 영업과 관련한 금품 등의 수수행위. 다만, 사회적 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회사의 사전승인(경미한 경우에는 사후보고)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8. 자신 또는 특정한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특정한 중개회사에 자산의 매매위탁을 집중하는 행위
9. 회사내의 직위와 업무를 이용하여 임직원 자신, 가족 및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제 9 조 (미공개 정보 등의 이용행위 금지)

- ① 회사업무 또는 펀드업무와 관련하여 상장법인의 공개되지 아니한 중요한 정보를 알게 된 임직원이나 이들로부터 당해 정보를 제공받은 임직원은, 미공개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시세조종 등의 행위에 가담하여서는 아니된다.
- ② 회사업무 또는 펀드업무와 관련하여 비상장법인의 널리 알려지지 아니한 중요한 정보를 알게 된 임직원이나 이들로부터 당해 정보를 제공받은 임직원은, 이러한 중요 정보를 이해상충 관계에서 펀드 및 투자자 이익 우선 원칙에 위배되게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10 조 (비밀 유지 및 사적 유용 금지)

- ① 임직원은 업무수행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정보(투자정보, 투자자 관련 정보 등을 불문하고 비밀로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모든 정보를 말하며, 이하 본 규정에서 동일하다)를 업무수행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어떠한 형태로 든(문서기록, 복사본, 구두, 파일, 전자메일, 팩스 등)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아니된다.
- ② 비밀정보는 "정보차단원칙"(Chinese Wall)과 "필요성에 의한 제공원칙"에

의거하여 관리되어야 한다.

- ③ 비밀정보인지의 여부가 불명확한 정보는 일단 비밀이 요구되는 비밀정보로 간주한다.
- ④ 임직원은 비밀정보가 포함된 서류는 필요 이상의 복사본을 만들거나 방치하여서는 아니된다.
- ⑤ 임직원은 비밀정보를 물리적으로 통제되는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 ⑥ 회사가 외부의 이해당사자와 비밀유지 협정을 맺는 경우 관련 임직원은 해당 협정의 내용에 따라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 ⑦ 임직원은 자신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비밀정보를 다른 임직원에게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 ⑧ 임직원은 비밀정보가 보관되어 있는 전산시스템을 ID 및 비밀번호 등 적절한 보안장치를 구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⑨ 임직원은 전산시스템의 비밀번호를 정기적으로 갱신하고 비밀번호가 외부에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보안에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제 11 조 (윤리의식)

- ① 임직원은 업무수행을 빙자하여 사적인 업무를 취급하거나 그로 인한 이익을 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 ② 모든 임직원은 업무 수행 중에 특정한 임직원, 투자자, 회사와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상황 또는 사업거래는 회피하거나 참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 준법감시인에게 통보하고 공정하게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업무와 관련된 모든 정보는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는 한 비밀로 유지, 관리되어야 하며, 정보의 사용은 정보를 취급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에게만 국한되어야 한다.
- ④ 임직원은 투자대상기업과의 관계에 있어 직무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과도한 사적인 이익(향응, 접대 포함)을 제공받아서는 아니된다.

제 12 조 (준법감시인의 임면)

- ① 준법감시인은 원활한 준법감시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로서 대표이사가 임명하고, 그 임기는 1년 이상으로 한다.
- ② 준법감시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 해임되지 아니한다.
 - 1.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
 - 2. 사임

3. 회사 내부규정에서 정한 면직사유에 해당되는 등 준법감시인의 신분을 유지하기가 곤란한 경우
- ③ 회사는 준법감시인이 해임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내부통제업무의 연속성 유지를 위해 지체 없이 새로운 준법감시인을 임명하여야 한다.

제 13 조 (독립성 확보)

회사는 준법감시인이 직무를 공정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독립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당해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유로 부당한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제 14 조 (준법감시인의 직무)

- ① 준법감시인의 권한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관계법령 또는 본 규정의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 및 위반자에 대한 조사
 2. 직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정보의 열람 및 제출 요구
 3. 각종 회의 참석·발언·보고
 4.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한 중지·개선·시정 요구
 5. 준법감시의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업무 또는 제도에 관한 규정·지침의 수립 및 안전장치 확보 요구
 6. 관계법령 또는 본 규정을 위반한 임직원에게 대한 징계 요구
 7. 기타 회사가 준법감시인의 권한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임직원은 제1항에 의한 준법감시인의 자료 및 정보제출 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③ 준법감시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직무를 수행하고, 직무수행과정에서 지득한 정보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15 조 (임직원 교육)

- ① 준법감시인은 임직원을 대상으로 관계법령 및 규정 준수 등에 대한 교육을 정기 또는 수시로 실시한다.
- ② 회사는 전향의 교육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 16 조 (규정 위반시 처리)

- ① 준법감시인은 임직원이 관계법령 및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여 대표이사과 감사에게 보고하도록 한다.

- ② 관계법령 및 규정을 위반한 임직원의 처리에 관하여는 회사의 인사규정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③ 준법감시인은 투자자와 관련된 분쟁처리 사례를 정기적으로 전파함으로써 투자자보호에 대한 임직원의 의식을 고양하고 유사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 4 장 이해상충방지를 위한 단계별 준수사항

제 17 조 (투자자금 조성 단계)

- ① 회사는 투자자를 유치함에 있어, 부당한 투자자 유인행위,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등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② 회사는 펀드의 업무집행과 관련하여 투자자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취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18 조 (투자대상기업 선정 및 투자단계)

- ① 회사는 투자대상기업 선정과 투자에 있어 관계법령 및 펀드 정관·규약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펀드 및 투자자를 위하여 최적의 투자대상기업을 선정하여 투자하여야 한다.
- ③ 회사는 펀드와 회사 또는 투자자들 사이의 이해상충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련된 내용을 투자자들에게 알려야 한다.
- ④ 회사는 투자대상기업의 선정, 투자금액, 투자조건 등의 투자관련 내용에 관하여 투자자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⑤ 회사가 투자대상기업에 회사의 고유계정, 특수관계인 또는 회사가 운영하고 있는 다른 펀드를 통하여 별도의 투자를 하였거나 하는 경우,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그에 관한 정보를 투자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⑥ 회사가 투자대상기업과 사이에 투자계약과 별도의 개별적인 계약이나 약정 등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펀드나 투자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이해상충의 발생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투자자들에게 관련 내용을 알려야 한다. 회사가 사후적으로 이해상충문제를 발견한 경우에는 이를 투자자들에게 고지하고 투자자들의 동의를 얻도록 한다.

제 19 조 (투자대상기업 관리 및 운영단계)

- ① 회사는 기투자된 투자대상기업에 관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투자대상기업과펀드 사이에 체결된 투자계약 등 제 계약의 준수 여부를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투자대상기업과 별도의 사적 계약이나 거래, 별도의 펀드를 통한 투자 등을 함에 있어서 이해상충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투자자들에게 알려야 한다.

제 20 조 (투자자금의 회수 및 분배단계)

- ① 회사는 투자대상기업으로부터 투자자금을 회수하는 경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펀드 및 투자자의 이익을 위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투자자금의 회수시기, 방법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 ② 회사가 직접 또는 펀드 등을 통하여 복수의 계정으로 투자한 투자대상기업으로부터 투자자금의 회수시기나 회수방법, 조건 등을 달리하여 투자자금을 회수하는 경우, 회사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그에 관한 정보를 투자자들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③ 회사는 투자자금의 청산 및 분배과정에서 회사가 운영하고 있는 다른 펀드와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업무처리를 하고 이에 관한 합리적인 근거를 마련하여 두어야 하며, 펀드 및 투자자들과의 관계에서 이해상충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 5 장 기타 준수사항

제 21 조 (보고의무)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상급자와 준법감시인에게 당해 사실을 보고하여야 하며, 회사나 감독기관이 이와 관련하여 상세한 정보 또는 협조를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성실하고 솔직하게 응하여야 한다.

1. 자신이나 다른 임직원이 관련법령 또는 회사의 규정을 어겼거나 어겼다고 의심되는 경우
2. 임직원의 지위나 역할로 인하여 투자자나 회사의 사업상 관계자와 이해상충 문제가 야기될 것으로 여겨지는 경우
3. 회사의 업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정부 및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하여 선물을 하거나 선물을 제의하는 경우
4. 투자자의 불만을 직간접적으로 인지하게 된 경우
5. 임직원과 투자자 또는 회사의 거래 상대방과의 관계에 있어 사기, 부정직한 행위 또는 그러한 의심이 있는 행위가 있는 경우
6. 자신 또는 다른 임직원이 체포, 기소, 유죄의 판결 또는 정부나 감독기관으로부터 행정조치 또는 처벌을 받았거나 혹은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7. 자신 또는 다른 임직원이 청문회나 소송 등에 당사자 또는 증인, 참고인 등으로 관계된 것을 알게 된 경우

제 22 조 (차별금지 및 성희롱 방지)

- ① 회사는 임직원의 고용, 승진 등에 있어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지위나 신체 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하여 대우하여서는 아니된다.
- ② 직장내 성희롱은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고 건전한 직장 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이므로 회사 및 임직원은 이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 23 조 (대외활동)

- ① 임직원이 강연, 연설, 교육, 기고, 방송, 인터뷰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사전승인을 받아 담당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는 사전적으로 회사의 정책과 방향에 대하여 강연, 연설, 교육, 기고, 방송, 인터뷰할 수 있는 담당자를 지정하여 사전승인을 면제할 수 있다.
- ② 임직원은 발표하고자 하는 내용, 사용되는 원고나 자료에 대해 회사의 사전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 ③ 회사의 공식적인 의견과 개인의 의견은 명확히 구별하여야 하며, 회사의 명확한 경영철학 및 원칙에 반하는 개인의견을 언급하여서는 아니된다.
- ④ 대외활동으로 취득한 금전적인 보상은 회사에 신고하고, 취득을 허락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 ⑤ 대외활동시 금지되는 내용 및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자신의 전문분야가 아닌 내용
 - 2. 투자권유로 해석될 수 있는 단정적인 시장전망 또는 의견과 특정 투자대상회사에 대한 단정적 판단 또는 의견
 - 3. 투자자가 동의하지 아니하는 상황에서 특정 투자자에 대한 언급
 - 4. 회사 및 투자대상회사의 경쟁업체의 상품, 인력, 정책에 대한 비방
 - 5. 전현직 임직원의 업무수행능력, 투자실적에 대하여 근거 없는 주장 및 언급
 - 6. 회사 및 계열사의 주식가치, 미래의 수익가치에 대한 판단
 - 7. 회사의 명예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주제
 - 8. 미래의 투자결과에 대하여 확정적인 판단을 제시하거나 수익을 보장하는 행위

9. 과거의 실적을 근거 없이 과장하는 행위
10. 확정되지 아니한 기획단계에 있는 사항에 대한 언급

제 24 조 (정부 또는 감독기관과의 접촉)

임직원은 회사의 업무상 정부 또는 감독기관과 연락하거나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회사에 사전 통보 및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법령에 의하거나 회사의 요청에 의한 경우 또는 단순 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사후보고로 갈음할 수 있다.

제 25 조 (자금세탁 방지)

- ① 임직원은 범죄행위 등 불법적인 활동에서 발생한 자금을 수탁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② 임직원은 불법적인 활동에서 발생한 자금을 합법적인 활동에서 발생한 자금으로 가장하기 위한 자금세탁 과정에 회사가 이용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③ 임직원은 투자자의 자금을 수탁할 때에 자금의 원천 및 투자자의 사업내용에 대하여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④ 임직원은 불법적인 활동에 의하여 발생한 자금으로 의심되는 자금을 수탁하거나 불법적인 활동을 하는 투자자를 유치하게 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회사에 통보하여 회사가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⑤ 투자자의 자금을 수탁함에 있어 차명 및 가명계좌를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⑥ 회사는 임직원이 혐의거래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감독하는 한편 정기 또는 수시로 교육프로그램을 시행하여 자금세탁에 관한 관심을 제고하도록 한다.

제 26 조 (금융사고 예방)

- ① 금융사고의 예방을 위해 모든 금전 출납은 각종 안전장치를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
- ② 법인 인감 및 인장은 담당부서장의 승인여부와 용도의 적정성을 확인 후 사용하여야 하며, 분실 내지 도용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 ③ 금전 출납 담당자의 부재시에는 법인 인감, 인장, 통장 등의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 ④ 금전 출납 담당자는 금전이 정당한 권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지급되지 않도록 각종 증명서나 첨부서류 등을 철저히 확인하고, 증빙서류를 보관하는 등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⑤ 임직원은 일상적인 경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일정규모 이상의 비정상적인 거래의 발생 여부 및 각종 결재 시 거래증빙과 상호 대조 이행 여부 등을 상시 적으로 확인 점검하여야 한다.
- ⑥ 금융사고 발생시 보고 및 조치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관련법규 및 내부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붙임 1)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임직원의 거래 기준 및 절차

제 1 조 (목적)

본 규정은 컴플라이언스 규정의 부속 규정으로서 회사가 이해상충 방지 체계를 갖추에 있어 그 소속 임직원이 지켜야 할 주의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직원”이란 어떠한 형태로든 회사에 소속되어 업무를 수행하는 임원및 직원을 말한다.
2. “투자자”란 회사가 운용 또는 자문하는 벤처투자조합, 사모집합투자기구, 해외소재 펀드 등 투자기구(이하 “펀드”라 총칭함)에 출자약정 또는 출자한 자를 말한다.
3. “상장증권 등”이란 증권시장에 상장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상의 금융투자상품을 말한다.
4. “비상장증권 등”이란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상의 금융투자상품을 말한다.
5. “사적인 거래”란 임직원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상의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자기계산으로 하는 거래를 말한다.
6. “유의대상기업”이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 가. 투자대상기업 및 그 계열회사
 - 나. 회사의 투자심의위원회가 진행되고 있거나 예정되어 있는 기업 및 그 계열회사
 - 다. 회사가 투자검토를 중단한 후 1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
 - 라. 회사가 (잠재적) 사업관계에 있는 기업 또는 그 계열회사
 - 마. 회사가 계열사와 사업관계에 있는 기업
 - 바. 회사의 고위 경영진, 최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가 이사로 재임 중인 기업

제 3 조 (기본 원칙)

- ① 임직원은 투자자, 투자대상기업, 회사와의 사이에서 이해상충의 관계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② 임직원은 부득이 전항의 이해상충의 관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그 사실을 회사의 준법감시인 또는 그에 준하는 자에게 알려 회사가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이해상충의 가능성을 낮출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임직원은 제1항의 이해상충의 관계에서 어떠한 경우든 펀드 및 투자자, 회사의 이익을 우선하여야 한다.
- ④ 임직원은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투자자, 투자대상기업, 회사에 손해 또는 손실을 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 ⑤ 임직원은 회사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투기가 아닌 건전한 투자를 하여야 하고, 모든 거래의 과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 ⑥ 임직원은 투자대상기업을 포함한 유의대상기업의 널리 알려지지 아니한 중요한 정보에 근거한 부당한 거래(시세조종, 시장질서 교란행위 등 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모든 거래 포함)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⑦ 임직원은 회사의 업무를 사적인 거래에 우선해야 하며, 회사의 업무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적인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4 조 (실명거래 등)

- ① 임직원은 사적인 거래를 함에 있어 본인 실명 계좌만을 이용하여야 하고, 배우자 등 친인척, 지인 등의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② 임직원은 사적인 거래를 함에 있어 가급적 최소한의 계좌를 이용하여야 한다.

제 5 조 (상장증권 등 거래에 관한 사항)

- ① 임직원은 유의대상기업과 관련된 상장증권 등에 관한 사적인 거래를 하는 경우 회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임직원은 본인이 사적인 거래를 통해 취득한 상장증권 등 관련 유의대상기업에 회사 또는 펀드가 투자하고자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 투자심의위원회 전일까지 그 사적인 거래 내역을 서면으로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임직원은 매년 말일 기준 본인 명의로 취득하고 있는 모든 상장증권 등에 관한 신규취득 사실 및 변경사항을 서면으로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④ 회사는 임직원에게 언제든지 상장증권 등 거래와 관련하여 설명을 요구할 수 있고, 임직원은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제 6 조 (비상장증권 등 거래에 관한 사항)

- ① 임직원은 유의대상기업과 관련된 비상장증권 등에 관한 사적인 거래를 하는 경우 회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임직원은 본인이 사적인 거래를 통해 취득한 비상장증권 등 관련 유의대상기업에 회사 또는 펀드가 투자하고자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 투자심의위원회 전일까지 그 사적인 거래 내역을 서면으로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 회사는 임직원에게 언제든지 특정 유의대상기업을 공지 또는 고지하며 이와 관련된 비상장증권 등에 관한 사적인 거래 내역을 보고하게 할 수 있고, 임직원은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 ④ 회사는 임직원이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하지 않은 유의대상기업과 관련된 비상장증권 등에 관한 사적인 거래가 있을 수 있다는 단서가 있는 경우 임직원 본인, 배우자, 직계비속 명의의 계좌 공개 및 그 소명을 요구할 수 있고, 임직원은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 ⑤ 회사가 유의대상기업에 관련된 비상장증권 등에 관한 임직원의 사적인 거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회사는 해당 임직원에게 해당 비상장증권 등의 처분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임직원은 회사의 조치에 대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 ⑥ 임직원은 매년 말일 기준 본인이 취득하고 있는 유의대상기업이 아닌 기업의 비상장증권 등에 관한 신규취득 사실 및 변경사항을 서면으로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7 조 (투자 회수와 관련된 사항)

- ① 제5조 내지 제6조에 의하여, 임직원이 회사 또는 펀드와 함께 관련 상장증권등 또는 비상장증권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임직원은 가급적 회사 또는 펀드와 함께 투자자금 회수를 진행하여야 한다.
 - ② 임직원이 전항과 달리 회사 또는 펀드와 다른 시기에 투자자금 회수를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 임직원은 회사에게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상장증권 등 또는 비상장 증권 등의 내역, 투자자금 회수 시기를 달리하는 이유를 상세히 밝혀야 한다. 단, 펀드가 존속기간 만료 등으로 부득이 임직원에게 앞서 투자자금 회수를 진행해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 8 조 (정보 이용 제한)

임직원은 유의대상기업과 관련하여 습득한 널리 알려지지 아니한 정보가 그 공개여부에 따라 증권 등의 가치에 상당한 변동이 있을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중요 정보인 경우에는 이와 관련된 어떠한 상장증권 등 또는 비상장증권 등에 관한 사적인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